##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·전자금융거래법위반·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명예훼손(피고인2 ·3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)

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2. 17. 2013고단7947, 2014고단5870(병합)]

## 【전문】

【피고인】 피고인 1외 2인

【검 사】정옥자, 서봉규(기소), 허준(공판)

【변 호 인】법무법인 우송 담당 변호사 윤기찬 외 1인

## 【주문】

1

피고인 1을 징역 8월에, 피고인 2, 피고인 3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.

다만, 피고인 2,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. 5. 8.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의점 및 명예훼손의점과 피고인 2,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. 5. 7.자 및 2013. 6. 17.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의점 및 명예훼손의점은 각 무죄.

피고인 3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.

## [이유]

1

[이유]

1

【이유】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